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
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구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2.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④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⑦ 개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제19조제1항 단서”를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일부·추가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23조의 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일부 지급을 우선 결정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24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23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④ (생략)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9조제2항 ----- ----- . ----- 제19조제2항 ----- ----- ----- ----- ----- ----- ----- ----- --.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제19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개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④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2